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62,495,600	52,874,868
일반회계	1,394,170,649	41,825,119
특별회계	368,324,951	11,049,749
공기업특별회계	138,206,751	4,146,2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602,126	1,788,0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604,625	2,358,139
기타특별회계	230,118,200	6,903,546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9,631,695	1,188,9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06,205	171,18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33,343	55,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3, 139, 952	4,594,199
주택 사업 특별 회 계	2,916,482	87,4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11,230	48,337
기반시설특별회계	465,887	13,977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32,726	982
주차장특별회계	24,780,680	743,420

-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516,226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1,5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이 정해진 외부기관 전입금 등은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